

관악구 청년주택(청춘가옥)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관악구에서는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하여 청년 매입임대주택(수요자맞춤형)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만료 등으로 공실 발생한 주택 「청춘가옥」의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관악구 「청춘가옥」 [청년 매입임대주택(수요자맞춤형)]

- ▶ 이 주택은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의 안정적 거주와 행복 증진을 위해 관악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력하여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 이 주택은 공동체 주택으로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및 공동요금 지출 방법 등의 자치 규약을 직접 만들고 실천하며,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총회 등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미 참여시 계약 및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 ▶ 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커뮤니티실(주민공동시설), 승강기 등 공용·전용부분에 대한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확조 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가 발생하며 부담 주체는 입주자입니다.
- ▶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재계약 거절 또는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 5. 3.(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심사과정 등에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주택은 **1인 가구 청년 전용 공공주택이므로 본인 외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입주 자격을 준수하지 않을 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입주민에게 통보 후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입주 후 계약과 동일 조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의 사항 참조)
- 이번 모집 공고문의 모집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 및 해당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필요(누락 시 신청 불가)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1. 모집 개요

■ **모집대상:** 관악구 청년주택(청춘가옥) 공실 3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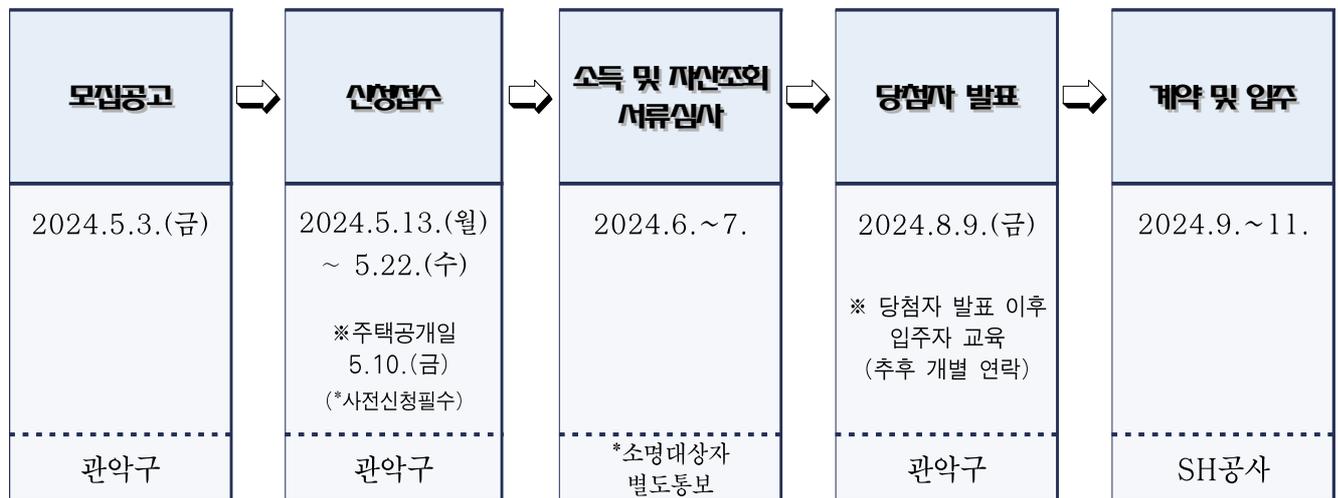
■ **신청기간:** 2024. 5. 13.(월) ~ 5. 22.(수) 18:00 까지

※ 마감일 신청자 집중 등으로 인해 전송오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 (신청서 및 증빙서류 누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송달일시 기준 신청기간 이외 접수된 건은 무효처리)

■ **신청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하 내용에서 참고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소득 및 자산조회 등 서류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전 주택공개 (*신청자에 한함)

■ **공개일시:** 2024. 5. 10.(금) 14:00 ~ 16:00

■ **공개방법:** 신청 후 담당자 안내에 따라 현장 방문(공개)

■ **신청방법:** 유선(☎02-879-5921) 또는 이메일(jsky321@ga.go.kr)

■ **신청기간:** 2024. 5. 3.(금) ~ 5. 9.(목) 16:00까지

※ 담당자 승인을 받은 신청 건에 한하여 주택 확인이 가능하며, 방문 일정 등은 문자(SMS)로 개별 통보합니다.

※ 공고문상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나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소음도, 내부 조도, 주택진입로 등 내·외부환경(생활여건)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정된 주택공개 기간 이후에는 당첨자 발표 전까지 추가 주택 확인은 불가합니다.

3. 공급 개요

■ 주택 개요

- 공급호수: 총 3세대(203호, 205호, 401호)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10길 5(난곡동)
- 공급시설: 지상 5층 18세대, 커뮤니티실(1층, 17.17㎡) 1개소, 주차장 8면, 승강기 1대
 ※ 커뮤니티실(주민공동시설) 입주민 공동사용
- 계약기간: 2년(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재계약 최대 2회,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요건: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기준에 따른 자산 보유 기준 등 충족

■ 주택규모 및 임대조건

※ 공동관리비 및 개별공과금은 별도 부담
 (단위: 원)

구분	호수	전용 면적 (㎡)	발코니 확장 (㎡)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청춘가옥 (법원단지 10길 5)	0203	30.07	4.875	18,420,000	240,000	30,710,000	400,000
	0205	27.23	-	16,340,000	212,900	27,240,000	354,900
	0401	29.96	1.56	18,040,000	235,000	30,080,000	391,800

※ 이 주택은 **1인 가구 청년 전용 공공주택**이므로 **본인 외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입주할 수 없음**

※ 표시된 임대보증금(월임대료)에서 **60%까지 상호전환 가능**
 • 상호전환 시기는 기본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연 1회 전환 가능,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02-828-5100~1)

■ 위치 도



■ 입지여건

대중교통 및 입주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또는 신대방역 하차 난곡행 버스 이용 · 2호선 신림역 하차 5번 출구에서 난곡행 버스 이용 -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간선버스 : 506 · 서울지선버스 : 5522A, 5522B, 5523, 5524, 5615, 5616, 8552 · 마을버스 : 관악06 · 경기도버스 : 20 - 세이브마트, 우림시장, 미성체육관, 난곡동주민센터, 난곡보건분소와 인접
----------------------------	---

■ 주택사진

- ※ 호수별로 부엌, 보일러실, 화장실 크기와 위치 및 방 유무가 다를 수 있음
- ※ 호수별로 옷장 구비유무 및 크기가 다를 수 있음



4.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4.5.3.)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39세 이하 미혼인 청년

※ 1984.5.4. ~ 2005.5.3. 출생

※ 혼인 중이 아닐 것 / 외국인 신청 불가

나. 세대원(신청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

다. 소득 및 자산기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자산기준 있음)

- 총 자산가액 2.41억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인 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자산기준 없음)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신청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외국인 제외)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 [별표1] 참조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 [별표2] 참조

■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구 분	기 준					
소 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2,438,075	3,249,427	3,599,325	4,124,234	4,387,536
	월 평균소득 70% 이하	3,134,668	4,332,570	5,039,054	5,773,927	6,142,550
	· 위의 월 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금액 ·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액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3 ①항에 따라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하여 적용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월 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한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하되, 관악구에서 입주대상자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하는 것으로 봄					
자 산	총자산가액: 2.41억 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 한함 ·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와 다를 경우 소명자료를 별도 제출함					
자 동 차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 한함					

■ 입주자격 검증 및 소득·자산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입주자격 검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
소득·자산 확인방법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로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4. 5. 13.(월) ~ 5. 22.(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전자우편접수 - 관악구청 이메일(jsky321@ga.go.kr)

※ 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작성·준비된 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모아 이메일 제출

※ 그림파일(jpg, png 등), 압축파일(zip, egg 등) 형태로 제출 불가

■ 작성서식: 관악구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고시/공고 → 관악구 청년주택(청춘가옥)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문에 신청서 등 서식 게시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발송 시 제목은 반드시 “청춘가옥_성명_날짜”로 기재 발송. (예: 청춘가옥_홍길동_20240513)

※ 서류 등을 카메라 및 핸드폰으로 촬영 또는 핸드폰 스캐너(캠스캐너 등)를 활용하여 제출할 시 접수 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 또는 이메일 발송 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또는 구비서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정기간 내 미도착한 서류 또는 이후 도착분을 무효로 간주합니다.

■ 메일 송부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확인 메일 확인(1일 이내 전송) -- 메일 미수신 시 유선(☎02-879-5921)로 접수 여부 확인

■ 제출서류

① 입주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공동체주택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주민등록초본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신청자 기준”으로 “공고일(2024.5.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 서류는 자필로 작성 (입주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 아래의 제출서류별 작성 및 발급방법(내용) 필독

연번	종 류	내 용	비 고
1	입주 신청서	•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자 기준으로 빠짐없이 자필로 작성 하여 제출	신청자 작성 [양식 참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모든 동의란에 동의(체크) 필요 •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3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정자로 자필로 작성 (※사인 및 날인 불가)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정자로 자필로 작성 (※사인 및 날인 불가, 누락 시 신청불가)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반드시 출력 후 정자로 작성해야하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금지	
4	공동주택 입주자 의무사항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서명 또는 날인	
5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분리 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동주민센터 정부24
6	주민등록초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초본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되도록 발급 ※ 초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7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기준 발급(상세내역으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8	혼인관계 증명서	• 신청자 기준 발급(상세내역으로 제출) ※ 미혼자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전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붙임자료를 충분히 숙지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024.5.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 및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모든 동의란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 소득입증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며,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6. 심 사

■ 소득 및 자산조회

- 조회기간: 2024. 6. ~ 7.
- 소명대상자 서류제출: 개별 통보
 - ※ 주택, 소득, 자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적격 판정자로 확정됩니다.

■ 선정 심사

- 심사방법: 서류심사(객관적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 점	합 계(①+②)	
① 월평균 소득	50% 이하	40	100	
	50% 초과 ~ 70% 이하	30		
② 거주기간	관악구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60
		2년 이상 ~ 5년 미만		55
		2년 미만		50
	관악구 외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45
		2년 이상 ~ 5년 미만		40
		2년 미만		35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최종 전입신고일부터)을 의미하며, 말소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관악구/서울특별시로 재등록, 재전입 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 동점자 처리
 - ① 월평균 소득이 낮은 순 ② 관악구 연속거주기간이 긴 순 ③ 서울시 연속거주기간이 긴 순 ④ 연소자 순(생년월일 기준)
- 예비입주자 선정
 -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2배수 내외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 입주 후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동·호수 배정
 - 서류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희망 동·호수 우선 반영하여 배정
 - 입주신청서에 희망호수(1~3지망) 기재
 - ※ 사전주택공개일(5.10.) 현장 방문 확인

7. 당첨자 발표

■ 발표예정일: 2024. 8. 9.(금) ※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게시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당첨자 문자(SMS)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당첨자의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잔여 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를 먼저 공급하고 예비입주자 소진 후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입주자 교육

■ 일 시: 2024. 8월 중(예정) ※ 입주 예정자 대상 별도 안내

■ 장 소: 청춘가옥 1층 커뮤니티실(법원단지10길 5)

■ 강 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체 코디네이터

■ 내 용: 공동체 주택의 이해 및 특징, 입주 후 유의사항 등

※ 입주자 대상 필수 의무사항으로 미참여 시 계약취소 및 재계약 거절 등 불리한 사유로 적용될 수 있음

※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문자(SMS) 통보

9. 계약 및 입주

■ 최종 계약

○ 계약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매입주택공급부(☎ 02-3410-8544, 8549)

○ 계약기간: 9월 중(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계약 유의사항

- 계약 시 보증금의 1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 잔금 납부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입주일을 협의한 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월임대료)의 60%까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연 1회)

○ 구비서류

본인 내방 시	신분증, 계약자 도장(서명 가능), 계약금납부 영수증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이용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출력하여 오시면 빠른 업무처리 가능(계약금은 선정된 주택 임대보증금의 10%)
제3자 대리인 내방 시	상기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계약자도장 포함)' 외 - 직계가족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입증서류 - 제3자 방문 시: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입주기간 및 입주내용

○ 입주기간: 2024. 10월 ~ 11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 요건 등과 같이 자격 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 추후 월 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 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 주택도시기금 대출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대출 목적물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 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10. 유의 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여부 및 소득·자산 등 해당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최초계약 포함 최장 10년)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갱신 시 입주 자격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 법령에 의거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납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일 이전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마감일 이전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사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5.3.)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지정기간 내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소멸되지 않을 시 배점 차감 또는 탈락 처리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주택을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현장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반드시 주택공개 일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2배수 내외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고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공가 세대에 대해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는 입주대상자 발표 시 함께 발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입주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입주대상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선정 사실 미확인 및 미계약으로 인한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입주 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소득자산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 등)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자동차금액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 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무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주택 미선택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동호선정 계약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실 배정은 서류 심사 고득점자순으로 희망호수를 우선 반영하여 배정하며, 호실 배정 후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선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계약)자가 된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p>기금대출 등 입주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임대계약 관리 및 주요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담당합니다.
- 이 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커뮤니티실 등 주민공동시설이 있습니다.
- 커뮤니티실(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등 입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며 커뮤니티실, 승강기 정화조 등 사용에 따른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 및 관리비 예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담주체는 입주자임)
- 해당 주택은 전기안전관리, 방화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등의 대행관리가 필요한 주택이므로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주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위탁관리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 승강기, 계단, 복도, 현관, 공용공간, 주차장, 커뮤니티실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동체 규약에 입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유희주차장 발생 시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규약을 직접 만들고 실천하며,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총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활동에 미참가 시 추후 재계약 거절 등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호실별 전용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호실 배정은 최종 입주 순위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므로 저층 또는 고층에 배정될 수 있고, 공동주택 특성상 생활소음 또는 조망권 제한,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호실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거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청년1인가구 전용 공공주택이므로 본인 외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거주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입주자격을 준수하지 않을 시 입주민에게 통보 후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상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나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주택공개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소음도, 내부조도, 주택진입로 등 내·외부환경(생활여건)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호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며 지정된 주택공개일 이후에는 당첨자 발표 전까지 추가 주택 확인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개일시(신청자 대상): 2024.5.10.(금) 14:00 ~16:00
-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는 구청·동주민센터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 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발생 원인 제공 행위,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타 입주자에 성희롱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재계약 거절 또는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변경하거나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나 전대할 수 없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 혹은 전대한 경우 당첨된 날로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명도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조, 제65조 및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제34조)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공동체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 법령,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계 직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갱신 계약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에 공가 세대 발생 시 사업 주체는 추가 입주자모집을 위한 주택공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2-879-5921

■ 계약 관련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 02-3410-8549, 8544

■ 입주 관련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동작센터 ☎ 02-828-5100~1

[별표1] 무주택세대 구성원 범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 구성원(=세대) 이란, 아래 대상자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하며, 주택 소유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 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세대 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

구 분	내 용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외국인은 신청불가

※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 불가(세대원 자격검증이 불가능하므로)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기준에 따름

[별표2]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의 소유 기준일[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별표3] 소득 및 자산 출처(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분	항목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 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 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료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의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구분	항목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법원에 근거한 사채 -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자료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별표4]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

구분	총자산 기준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구분	총자산 기준
자동차	<p>※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아래의 경우는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고시 또는 지침에 의하여,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기간 내에 증빙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근로복지공단 자료 ③국민연금공단 자료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별표4] 소득 및 자산 산정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신청자 본인 및 부모 서명(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관악구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아래의 필수 사항에 전부 동의를 해주셔야(☑동의합니다) 입주모집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 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지속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해당여부 - 외국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포함) 외국인등록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준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관할)지방보훈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대행 법무사사무소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청약(중합)건축 가담합내역 및 납입회차 확인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성명, 계좌번호, 지로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약내역
(관할)지방보훈청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해당여부 확인 계약체결내역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서울특별시	임대주택 관리, 정책활용	성명, 생년월일, 계약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격 및 이력 등 이력 등 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자격심사결과, 계약이력
계약대행 법무사사무소	계약관련 일체 업무 대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사항, 당첨내역, 계약내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4.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 ① 모든 빈칸은 자필로 기재하되, 정자로 또박또박 작성
- ② 2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 부분
 - 세대구성원 모두의 자필 서명 필요
 - 서명란에 도장 날인 금지, 정자로 자필 기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작성예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강 감 찬	9 0 0 1 0 1 - 1 2 3 4 5 6 7
주소	반드시 출력 후 정자로 자필로 작성해야하며 전자기기로 작성금지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부	강 궁 진	5 9 0 7 0 1 -	강 궁 진	강 궁 진	
		1 1 2 3 4 5 6			
		0 1 0 - 2 3 4 5 - 6 7 8 9			
모	금 잔 디	6 3 1 2 3 0 -	금 잔 디	금 잔 디	
		2 1 2 3 4 5 6			
		0 1 0 - 2 3 4 5 - 9 8 7 6			
본인	강 감 찬	9 0 0 1 0 1 -	강 감 찬	강 감 찬	
		1 2 3 4 5 6 7			
		0 1 0 - 1 2 3 4 - 5 6 7 8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2 4년 0 5월 1 3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식4]

공동체주택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 주택의 표시

주택명	관악구 청춘가옥
주택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10길 5 (신림동 610-207)

본인은 상기 공동체주택의 입주(신청)자로

자치구로부터 공동체주택 입주자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1에 따라

공동체규약을 제정하고, 공동체공간을 운영하며,

공동체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 명: _____ (서명 또는 인)

※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1

공동체주택 :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